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02호
------	-------

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#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02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6. 8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 
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,  
나. 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  
나. 위원회 구성 등(안 제10조 ~ 제12조)  
- 위원의 수·자격·선임방법,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 
다. 위원회 운영(안 제13조)  
- 회의의 소집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, 간사 등  
라. 상위법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인용 법제명 및 조문번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  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4948(2023.05.16.)호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복지정책과-16492(2023.05.24.)호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5169(2023.05.01.)호]
- 4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3.05.02. ~ 2023.05.22.(21일간)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5) 위원회 신설 사전 검토 : 원안동의[자치행정과-13677(2023.05.04.)호]
- 6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7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

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”으로, “법 시행령 제2조제1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법 제8조”를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9조”를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
3.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소상공인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
2.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
3.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
4.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위원회 회의 등)**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1.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
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.

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,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14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

소	관	부	서	성	명
입 안 자	지역경제과장			유	재 락
	경제정책팀장			신	미 숙
	담당자			김	영 미 (746-6013)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에 따라 논산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,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“소상공인”이란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,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사업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창업 지원 : <u>법 제8조</u> 각 호에서 정한 사업</p> <p>2. 경영안정 등 지원 : <u>법 제9조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: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 ----- -----</p> <p>2. ----- : 「<u>소상공</u></p>

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·마케팅 등 사업

3. ~ 6. (생략)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-----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9조(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
3.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

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 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소상공인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가.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

나.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

다.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

라.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마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당연직 위원

<신 설>

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1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<신 설>

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

<신 설>

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1.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.

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,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○ 해당 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 없음

**나. 추계결과**

○ 해당 없음

**3. 작성자**

지역경제과장 유 재 락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



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□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

**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** ① 「소상공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
2. 제1호 외의 업종: 5명 미만